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Urban Gas Using Facilitie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실의 · 의결 : 2009월 4월 30일

지식경제부 승인 : 2009년 5월 15일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기 봉 : 중앙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김 광 섭 : 한진도시가스(주) 상무

당 연 직

김 무 흥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장

범 희 권 :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장

김 재 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안전이사

고압가스분야

김 연 종 : United Pacific PLG. 대표이사

김 진 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김 청 균 : 홍익대학교 교수

박 반 육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백 종 배 : 충주대학교 교수

윤 기 봉 : 중앙대학교 교수

최 문 규 :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부사장

액화석유가스분야

고 봉 식 : 대성셀틱(주) 대표이사

권 순 영 : LP가스공업협회 전무

안 병 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재 건 : 한성대학교 교수

장 석 웅 : 에스이피엔씨(주) 회장

황 정 호 : 연세대학교 교수

도시가스분야

김 광 섭 : 한진도시가스(주) 상무

오 신 규 :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이 수 경 :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정 충 기 : 서울대학교 교수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 번호	KGS FU551 ²⁰⁰⁹
코 드 명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목 차

1. 일반 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용어의 정의	1
1.4 기준의 준용	3
1.5 경과조치	3
1.5.1 배관의 설치 ·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3
1.5.2 배관의 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3
1.5.3 정압기의 안전밸브 분출부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4
1.5.4 정압기실의 기초, 벽 및 노출배관에 관한 경과조치	4
1.5.5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4
1.5.6 압력조정기의 설치 ·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5
1.6 용품 사용제한	6
1.7 폴리에틸렌관 설치제한	6
1.8 시설기준 특례	6
1.9.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	6
2. 시설기준	7
2.1 배치기준	7
2.1.1 화기와의 거리	7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해당없음)	7
2.1.3 사업소경계와의 거리(해당없음)	7
2.1.4 다른 설비와의 거리(해당없음)	7
2.1.5 정압기의 위치	7
2.2 기초기준(해당없음)	7
2.2.1 지반조사(해당없음)	8
2.2.2 기초공사(해당없음)	8
2.2.3 저장탱크 고정(해당없음)	8
2.3 저장설비기준(해당없음)	8
2.3.1 저장설비 재료(해당없음)	8
2.3.2 저장설비 구조(해당없음)	8
2.3.3 저장설비 설치(해당없음)	8

2.4 가스설비 기준	8
2.4.1 가스설비 재료(해당없음)	8
2.4.2 가스설비 구조(해당없음)	8
2.4.3 가스설비 두께 및 강도(해당없음)	8
2.4.4 가스설비 설치	8
2.4.5 가스설비 성능	9
2.5 배관설비기준	10
2.5.1 배관 설비 재료	10
2.5.2 배관 설비 두께	11
2.5.3. 배관설비 접합	12
2.5.4 배관 설치	17
2.5.5 부대설비 설치(해당 없음)	27
2.5.6 배관설비 성능	27
2.5.7 배관의 표시	27
2.6 정압기 기준	28
2.6.1 정압기설 재료	28
2.6.2 정압기설 구조	28
2.6.3 정압기설 두께 및 강도(해당 없음)	28
2.6.4 정압기 설치	28
2.6.5 정압기 성능	28
2.7 연소기 기준	28
2.7.1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29
2.7.2 그 밖의 설치기준	39
2.8 사고예방설비기준	39
2.8.1 과압안전장치 설치	39
2.8.2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40
2.8.3 긴급차단장치 설치 (내용 없음)	43
2.8.4 역류방지장치 설치 (해당 없음)	43
2.8.5 역화방지장치 설치 (해당 없음)	43
2.8.6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43
2.8.7 오발진방지장치설치 (해당 없음)	43
2.8.8 전기방폭설비 설치	43
2.8.9 환기설비 설치	43
2.8.10 부식방지설비 설치	45

2.8.11 정전기제거설비 설치(내용 없음)	45
2.8.12 전도방지장치 설치(해당 없음)	45
2.8.13 과류방지밸브 설치(내용 없음)	45
2.8.14 재해예방설비 설치(내용 없음)	45
2.8.15 불순물제거장치 설치	45
2.8.16 동결방지조치	45
2.9 피해저감설비 기준	45
2.9.1 방류둑 설치 (내용 없음)	45
2.9.2 방호벽 설치 (내용 없음)	45
2.9.3 살수장치 설치 (내용 없음)	45
2.9.4 제독설비 설치 (내용 없음)	45
2.9.5 중화 · 이송설비 설치 (내용 없음)	45
2.9.6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45
2.9.7 소화설비 설치 (내용 없음)	46
2.9.8 통행시설 설치 (내용 없음)	46
2.9.9 온도상승방지장치 설치 (내용 없음)	46
2.10 부대설비 기준	46
2.10.1 계측설비 설치 (내용 없음)	46
2.10.2 비상전력설비 설치(내용 없음)	46
2.10.3 통신설비 설치 (내용 없음)	46
2.10.4 운영시설물 설치(내용없음)	46
2.10.5 용기고정장치 설치(해당 없음)	46
2.10.6 배기덕트 설치(내용 없음)	46
2.10.7 바이패스관 설치	46
2.10.8 압력기록장치 설치	46
2.11 표시기준	46
2.11.1 경계표지	46
3. 기술기준	47
3.1 안전유지기준(내용 없음)	47
3.2 이입 및 충전기준 (해당 없음)	47
3.3 점검기준	47
3.3.1 전체시설 점검	47
3.3.2 기초 점검 (내용 없음)	47

3.3.3 저장설비 점검 (해당 없음)	47
3.3.4 가스설비 점검	47
3.3.5 배관설비 점검	48
3.3.6 정압기 점검	48
3.3.7 연소기 점검	48
3.3.8 사고예방설비 점검	48
3.3.9 패해저감설비 점검 (내용 없음)	48
3.3.10 부대설비 점검 (내용 없음)	48
3.4 수리 · 청소 및 철거기준 (내용 없음)	48
 4. 검사기준	48
4.1 검사항목	48
4.1.1 중간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해당 없음)	49
4.1.2 완성검사	49
4.1.3 정기검사	49
4.1.4 수시검사(해당 없음)	50
4.2 검사방법	50
4.2.1 중간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해당 없음)	50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50
 5. 임시저장기준(해당 없음)	55
 부록 A 1993.11.28일 이전 가스보일러설치기준	56
 A.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56
A1 공통사항	56
A2 반밀폐식보일러의 급 · 배기설비 설치 기준	58
A2.1 자연배기식	58
A2.1.1 배기통	58
A2.1.2 급기구 및 환기구	59
A2.2 챔버방식	60
A2.3 강제배기식	61

A2.3.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	61
A2.3.2 강제배기식 보일러	62
A2.4 복합배기통	62
A2.5 공동주택 공동배기방식	63
A3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65
A3.1 일반사항	65
A3.2 자연급·배기식	65
A3.2.1 외벽식	66
A3.2.2 챔버식	66
A3.2.3 덕트식	66
A3.3 강제급·배기식	69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Urban Gas Using Facilities)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검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 의결(안건번호 제2009-3호, 2009년 4월 30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3호, 2009년 5월 15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배관” 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1.3.2 “공동주택등” 이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3.3. “내관” 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3.4. “고압” 이란 1 MPa 이상의 압력(제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1.3.5 “중압” 이란 0.1 MPa 이상 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이상 0.2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6 “저압” 이란 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7 “액화가스” 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3.8 “보호시설” 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3.8.1 제1종보호시설

- (1)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방 · 어린이놀이터 · 학원 ·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 도서관 · 청소년 수련시설 · 경로당 · 시장 · 목욕장 · 호텔 · 여관 · 극장 · 교회 및 공회당
-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m²이상인 것
- (3) 예식장 ·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4) 아동 · 노인 · 모자 ·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3.8.2 제2종보호시설

- (1) 주택
-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m² 이상 1천 m² 미만인 것

1.3.9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이란 정압기실의 벽과 기초가 철근콘크리트인 정압기실을 말한다.

1.3.10 “캐비닛(Cabinet)형 구조의 정압기실” 이란 정압기, 배관 및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정압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압기실로 내식성 재료의 캐비닛과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구성된 정압기실을 말한다.

1.3.11 “이상압력통보설비” 란 정압기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이상유무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도록 경보음(70 dB 이상) 등으로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1.3.12 “긴급차단장치” 란 정압기의 이상발생 등으로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이상상승하는 경우 입구측으로 유입되는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13 “안전밸브” 란 정압기의 압력이 이상상승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1.3.14 “상용압력” 이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정압기 출구측압력이 2.5

kPa 이하인 경우에는 2.5 kPa을 말하며 그 외의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정한 정압기의 최대 출구압력을 말한다.

1.3.15 “검지부” 란 누출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16 “차단부” 란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17 “제어부” 란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4 기준의 준용

1.5 경과조치

1.5.1 배관의 설치 ·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1.5.1.1 1985년 7월 16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5.4.1.1, 2.5.4.1.2(1), 2.5.4.2.3, 2.5.4.2.7, 2.5.4.2.8, 2.5.4.3.3, 2.5.4.3.4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¹⁾

1.5.1.2 1988년 1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2중관 및 방호구조물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²⁾

1.5.1.3 1986년 5월 2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2.5.4.2.5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³⁾

1.5.2 배관의 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1.5.2.1 1992년 1월 8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는 2.5.1.1, 2.5.1.2 및 2.5.1.3.1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⁴⁾

1.5.2.2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5.1.2 및 2.5.1.3.1에 불구하고 다음에 따른다.⁵⁾

1.5.2.2.1 배관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의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제2-18-13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제2-18-13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제2-18-13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4)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제3-23-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5)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제3-23-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에는 0.2 MPa 이상인 배관)
 - (1-1)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1-2) 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 (1-3)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1-4) KS D 3570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 (1-5) KS D 3572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 (1-6)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 (1-7)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1-8) KS D 3577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레스 강관)
-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0.2 MPa 미만, 0.01 MPa 이상인 배관)
 - (2-1)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2-2)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 (2-3) 그 밖에 1.5.2.2.1(1)에서 정한 것
 -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0.01 MPa 미만)
 - (3-1) KS D 5301 (아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3-2) KS D 5539 (아음매없는 니켈합금관)
 - (3-3) 그밖에 1.5.2.2.1(1) 및 (2)에서 정한 것
 - (4)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
 - (4-1)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4-2)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4-3)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1.5.3 정압기의 안전밸브 분출부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설치된 정압기의 안전밸브 분출부의 크기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⁶⁾

1.5.4 정압기실의 기초, 벽 및 노출배관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공사계획 승인을 얻은 시설은 2.6.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⁷⁾

1.5.5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1.5.5.1 1993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는 2.7.1에 불구하고 부록 A를 따른다.⁸⁾

1.5.5.2 1994년 4월 30일 이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에는 2.7.1.3.2(4)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⁹⁾

1.5.5.2.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 제3-22-5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9호(2003. 12. 31) 제3-29-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8)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8호(1993. 11. 8) 부칙 제2호(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9)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8호(1993. 11. 8)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배기팬

- (1-1) 배기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인 것으로 한다.
- (1-2) 배기팬은 보일러 사용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 (1-3) 정전 또는 배기팬 고장시에는 가스를 차단하는 구조인 것으로 한다.
- (1-4) 가스의 차단장치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된 경우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또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된 경우 생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1-5) 배기팬의 능력은 가스소비량 1000 kcal/h당 20 °C에서 3 m³/h 이상일 것. 다만, 이때 배기팬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ガ스의 압력은 배기통의 저항과 배기통 주변의 풍압이상인 것으로 한다.
- (1-6) 자연배기식 급·배기설비 중 보일러의 배기통에 부착되는 배기팬의 성능은 보일러의 연소 및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기통

- (2-1) 배기통의 구경은 배기팬의 능력이상인 것으로 한다.
- (2-2) 배기통의 수평부는 경사가 있는 구조로 한다.
- (2-3) 배기통 텁에는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직경 16 mm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3) 급기구

- (3-1) 급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 (3-2) 급기구는 옥외 또는 현관등 통기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배기통 텁으로부터 배기ガ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위치로 한다.

1.5.5.3 2.7.1.2.1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⁰⁾ 다만, 배기통을 노후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배기통을 사용한다.

1.5.5.4 2002년 3월 9일 이전 설치된 강제급·배기식 보일러는 2.4.1.4.3(1)에 불구하고 다음 규정을 따른다.¹¹⁾

- (1) 2.7.1.4.2(1-1)부터 2.7.1.4.2(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5.5.5 2.7.1.2.4는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²⁾

1.5.5.6 2.7.1.2.17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³⁾

1.5.6 압력조정기의 설치·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1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¹⁴⁾

10)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30호(1998. 5. 7) 제5-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1호(2002. 3. 9) 제4-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 제4-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6 용품 사용제한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5) · 제2호가목6) · 제3호가목3)에 따라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7 폴리에틸렌관 설치제한

1.7.1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3)자)에 따라 폴리에틸렌관(이하, “PE배관”이라 한다)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2 PE배관은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라 폴리에틸렌용착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다.

1.8 시설기준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1.6, 2.4.5, 2.5.3, 2.5.6 및 2.6.5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

1.9.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

1.9.1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Q = \{(A \times 240) + (B \times 90)\} / 11\,000$$

여기에서,

Q : 월사용예정량 (단위 : m³)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kcal/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kcal/h)

1.9.2 1.9.1에서 “가스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1.9.2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14)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제3-26-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3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1.9.4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2. 시설기준

2.1 배치기준

2.1.1 화기와의 거리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2.1.1.2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해당없음)

2.1.3 사업소경계와의 거리(해당없음)

2.1.4 다른 설비와의 거리(해당없음)

2.1.5 정압기의 위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2.2 기초기준(해당없음)

2.2.1 지반조사(해당없음)

2.1.2 기초공사(해당없음)

2.2.3 저장탱크 고정(해당없음)

2.3 저장설비기준(해당없음)

2.3.1 저장설비 재료(해당없음)

2.3.2 저장설비 구조(해당없음)

2.3.3 저장설비 설치(해당없음)

2.4 가스설비 기준

2.4.1 가스설비 재료(해당없음)

2.4.2 가스설비 구조(해당없음)

2.4.3 가스설비 두께 및 강도(해당없음)

2.4.4 가스설비 설치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4.4.1 지하공급 차단밸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 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4.4.2 압력조정기 설치

2.4.4.2.1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2.4.4.2.2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 (2) 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 (3) 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입구쪽에

인접한 정압기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 (5)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2.4.4.3 계량기 설치

2.4.4.3.1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빛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한다.
- (2) 가스계량기($30 \text{ m}^3/\text{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4.4 중간밸브 설치

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 \text{ kcal/h}$ 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kPa 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3) 2개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2.4.4.4.2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을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5 호스 설치

2.4.4.5.1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 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 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2.4.4.5.2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2.4.5 가스설비 성능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누출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5 배관설비기준

2.5.1 배관 설비 재료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1.1 배관재료 선정기준

2.5.1.1.1 배관의 재료는 배관내의 가스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한다.

2.5.1.1.2 배관의 재료는 내부의 가스압력과 외부로부터의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1.1.3 배관의 재료는 토양·지하수 등에 대하여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1.1.4 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1.1.5 배관의 재료는 절단 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5.1.2 상용압력에 따른 배관선정

배관의 재료는 상용압력의 구분에 따라 다음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2.5.1.2.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는 0.2 MPa 이상)

- (1)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2) 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 (3)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4) KS D 3569 (저온배관용 강관)
- (5) KS D 3570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 (6) KS D 3572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 (7)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 (8)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9) KS D 3577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5.1.2.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2 MPa 미만, 0.01 MPa 이상)

- (1) KS D 3631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 (2)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 (3) 그 밖에 2.5.1.2 1에서 정한 것

2.5.1.2.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01 MPa 미만)

- (1)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 (2)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합금관)
- (3) 그밖에 2.5.1.2.1과 2.5.1.2.2에서 정한 것

2.5.1.3 설치장소에 따른 배관선정

2.5.1.3.1 지하매설 배관

지하매설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이음부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4 MPa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PE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1)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2)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3)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2.5.1.3.2 건축물내 매설배관

건축물 내에 매설하는 배관의 재료는 동관 · 스테인레스강관 ·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다

2.5.1.3.3 노출배관

노출배관의 재료는 2.5.1.2에서 규정한 배관을 사용한다.

2.5.2 배관 설비 두께

2.5.2.1 배관등의 두께는 가스의 성질 · 상태 ·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2 PE배관의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그 배관의 외경에 따라 표 2.5.2.2와 같이 한다.

표 2.5.2.2 압력범위에 따른 관의 두께

S D R	압 력
11 이하	0.4 MPa 이하
17 이하	0.25 MPa 이하
21 이하	0.2 MPa 이하
여기서 SDR(standard dimension ratio)=D(외경)/t(최소두께)	

2.5.3. 배관설비 접합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합하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력제거를 한다.

2.5.3.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으로 접합한다. 이 경우 모든 용접부(PE배관 및 호칭지를 80mm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 시험)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2.5.3.2 중압이상의 노출된 배관을 용접으로 접합하는 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 시험)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2.5.3.3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플렌지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 방법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라 실시한다.

2.5.3.4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주조품인 경우에는 기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 한다.

2.5.3.5 배관 용접부는 응력제거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3.5.1 오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것의 용접부

2.5.3.5.2 용기(최저사용온도가 -30°C 이하인 것을 제외)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의 길이이음 또는 원주이음의 용접부(굽힘가공 전에 용접을 하는 경우는 판두께가 10 mm를 초과하는 것 및 용접선이 교차하는 것을 제외) 혹은 용기에 노즐부(Nozzle Stub), 플랜지 등을 부착하는 용접부

(1) 탄소강으로 만든 것은 두께가 32 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용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열온도가 100°C 이상인 경우는 38 mm 이하로 한다.

(2) 몰리브덴강(몰리브덴강 함유량이 0.6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또는 크롬몰리브덴강(크롬함유량이 0.7 % 이하이고 몰리브덴 함유량이 0.65 %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만들어진 것은 두께가 16 mm 이하로 한다.

(3) 고장력강(구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최소값이 80 kg/mm^2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만들어진 것은 두께가 32 mm 이하로 한다.

2.5.3.5.3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관(굽힘가공 전에 용접을 실시한 것(곡률반지름이 관직경의 4배 이상으로 굽힘의 중립면을 따라 굽혀진 것은 제외) 및 최저사용온도가 -30°C 이하인 것을 제외) 등으로서 두께가 32 mm 이하인 길이이음 용접부

2.5.3.5.4 탄소강 또는 몰리브덴강(탄소함유량이 0.25 % 이하이고 몰리브덴 함유량이 0.65 %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두께가 32 mm(몰리브덴강에서는 13 mm) 이하인 것으로 만들어진 관 등 또는 헤더(최저사용온도가 -30°C 이하인 것을 제외)의 원주이음 용접부 또는 이것에 노즐부 플랜지 등을 부착하는 용접부

2.5.3.5.5 2.5.3.5.2(2)에서 정한 것 이외의 크롬몰리브덴강(크롬함유량이 3 %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만들어진 관 등(최저사용온도가 -30°C 이하인 것을 제외)의 원주이음으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1) 바깥지름이 115 mm 이하일 것
- (2) 두께가 13 mm 이하일 것
- (3) 예열온도가 120 °C 이상일 것

2.5.3.5.6 2.5 %니켈강 또는 3.5 %니켈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두께가 16 mm이하인 것(최저사용온도가 -30 °C이하의 것을 제외)의 용접부

2.5.3.5.7 9 % 니켈강, 비철금속재료 KS D 3531(내식내열 초합금봉) KS D 3532(내식내열 초합금관) KS D 3578(배관용 아음매없는 니켈 크롬철합금관) KS D 3757(열교환기용 아음매없는 니켈크롬철합금관)으로 만들어진 것의 용접부

2.5.3.5.8 응력제거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열 기타 용접부의 잔류응력의 감소로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법으로 용접된 용접부

2.5.3.6 2.5.3.5.2 및 2.5.3.5.4부터 2.5.3.5.6까지의 경우로서 용접부 모재의 두께가 다를 때는 모재의 두께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두께로 한다.

- (1) 맞대기아음의 경우 얇은 쪽의 판 두께
- (2) 겹치기아음의 경우 두꺼운 쪽의 판 두께
- (3) 관 노즐부(Nozzle Stub) 또는 플랜지 등을 부착한 용접부의 경우는 이것을 부착하는 부분의 두께

2.5.3.7 2.5.3.5에 따른 응력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5.3.7.1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한 번에 노(爐)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 번에 노에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넣을 수 있다.

2.5.3.7.2 노내에 넣는 경우 및 노내에서 꺼내는 경우에는 노내의 온도는 300 °C 이하로 한다.

2.5.3.7.3 노내 온도 300 °C 이상으로 가열하는 속도는 1시간당 다음 식(1)에 의해 구한 온도차(220 °C를 넘는 경우는 220 °C) 이하, 노내를 냉각하는 경우의 속도는 1시간당 다음 식(2)에 의해 산출한 온도차 (275 °C를 넘는 경우는 275 °C)이하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퍼얼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을 온도 650 °C 이상에서 냉각할 때는 1시간당 온도차는 50 °C 이하로 한다.

$$R = 220 \times \frac{25}{t} \quad \dots(1)$$

$$R = 275 \times \frac{25}{t} \quad \dots(2)$$

여기에서,

R : 온도차 (단위: °C)

t : 용접부의 두께 (단위: mm)

2.5.3.7.4 2.5.3.7.3의 경우 가열시키거나 냉각시키는 것의 표면상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상호간의 거리가 4 500 mm 이하인 것의 온도차는 100 °C 이하로 한다.

2.5.3.7.5 용접부는 표 2.5.3.7.5①의 모재의 종류에 따른 온도이상에서 두께 25 mm마다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두께가 6 mm 미만의 것에는 0.24시간) 이상 유지한다. 다만, 표 2.5.3.7.5①에 기재된 온도이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 2.5.3.7.5②의 온도와의 차에 따른 정수에 두께 25 mm마다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두께가 6 mm 미만의 것에서는 0.24시간)을 곱한 시간이상 유지한다.

표 2.5.3.7.5① 모재의 종류에 따른 온도

모재의 종류	온도(°C)
1. 탄소강	600
2. 크롬함유량이 0.75 % 이하이고 전합금성분이 2 %이하인 저합금강	600
3. 크롬함유량이 0.75 %를 초과하여 2 %이하이고 전합금 성분이 2.75 %이하인 저합금강	600
4. 전합금성분이 10 %이하인 합금강(2 및 3에 정한 것을 제외)	680
5. 퍼얼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740
6.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760
7. 2.5 % 니켈강 또는 3.5 % 니켈강	600

표 2.5.3.7.5② 온도와의 차에 따른 정수

표 2.5.3.7.5①의 온도와의 차(°C)	정수
0	1
30	2
60	3
90	5
120	10

[비고] 1. 표 2.5.3.7.5②에서 온도와의 차가 60 °C를 넘는 경우에는 표 2.5.3.7.5①의 1에 기재한 모재로서 담금질(Quenching)하여 텁퍼링(Tempering)한 것만 적용한다.
2. 표 2.5.3.7.5②에서 온도와의 차가 중간값인 경우는 비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5.3.7.6 2.5.3.7.5에 있어서 가열된 것의 임의의 2점간에서의 온도차는 50 °C 이하로 한다.

2.5.3.7.7 전체를 두 번이상으로 나누어 응력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가열부의 겹치는 부분을 1 500 mm 이상으로 하며, 노밖에 나오는 부분의 온도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재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온한다.

2.5.3.8 원주이음의 용접부 또는 노즐부(Nozzle Stub), 사이트 등을 용기 혹은 관 등에 부착한 용접부(판의 일부를 떼어내고 부착물을 맞대기 용접한 것을 제외)에 대하여는 용접선을 중심으로 하여 용접부 판두께의 12배(관 등에 대하여는 용접비이드 나비의 3배이고 덧붙임 폭의 2배)이상의 폭을 2.5.3.7.3부터 2.5.3.7.6 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가열 및 냉각한 경우에는 2.5.3.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3.9 PE 배관설비 접합

PE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유지 및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접합한다.

2.5.3.9.1 PE배관의 접합은 관의 재질, 설치조건 및 주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눈·우천 시에는 천막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 용착한다.

2.5.3.9.2 PE배관은 수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합한다.

2.5.3.9.3 PE배관의 접합 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이프 등을 사용하여 다듬질한다.

2.5.3.9.4 금속관의 접합은 T/F(transition fitting)를 사용한다.

2.5.3.9.5 호칭지름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 이음매(fitting)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2.5.3.9.6 그 밖의 사항은 PE배관의 제작사가 제공하는 시공 지침에 따른다.

2.5.3.9.7 PE배관의 접합은 열융착 또는 전기융착에 의하여 실시하고, 모든 용착은 용착기(Fusion Machine)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맞대기융착 및 전기융착에 사용하는 용착기(이하 “융착기”라 한다)는 용착 조건 및 결과가 표시되는 것으로서 제조일(2002. 8. 31일 이전에 제조된 용착기의 경우에는 성능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공사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1) 열융착 이음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1) 맞대기 융착(Butt Fusion)은 관경 75 mm이상의 직관과 이음관 연결에 적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1-1) 비드(Bead)는 좌·우 대칭형으로 둥글고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1-1-2) 비드의 표면은 매끄럽고 청결하도록 한다.

(1-1-3) 접합면의 비드와 비드사이의 경계부위는 배관의 외면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한다.

(1-1-4) 그림 2.5.3.9.7①과 같이 이음부의 연결오차(v)는 배관 두께의 10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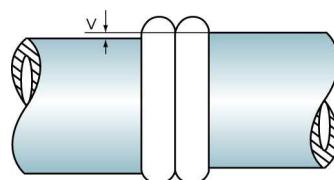


그림 2.5.3.9.7① 이음부의 연결오차(v)

(1-1-5) 호칭지름별 비드폭은 원칙적으로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 최소치이상 최대치이하이고 산출 예는 그림 2.5.3.9.7② 및 표 2.5.3.9.7①과 같다.

최소=3+0.5 t, 최대=5+0.75 t
여기에서, t = 배관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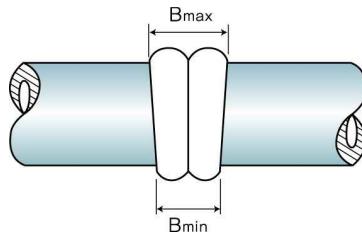


그림 2.5.3.9.7② 비드폭의 최소 및 최대치 예

표 2.5.3.9.7① 호칭지름에 따른 비드폭

호칭지름	비드폭(mm)		
	제1호관	제2호관	제3호관
75	7 ~ 11	-	-
100	8 ~ 13	6 ~ 10	-
125	-	7 ~ 11	-
150	11 ~ 16	8 ~ 12	7 ~ 11
175		9 ~ 13	8 ~ 12
200	13 ~ 20	9 ~ 15	8 ~ 13

(1-1-6) 접합하는 PE배관은 KS M 3514(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표 2 및 KS M 3515(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표 9, 10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호수의 관종류를 사용한다.

(1-1-7) 시공이 불량한 용착 이음부는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2) 소켓용착(Socket Fusion)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2-1) 용융된 비드는 접합부 전면에 고르게 형성되고 관 내부로 밀려나오지 아니하도록 한다.

(1-2-2) 배관 및 이음관의 접합은 일직선을 유지한다.

(1-2-3) 그림 2.5.3.9.7③과 같이 비드 높이(h)는 이음관의 높이(H)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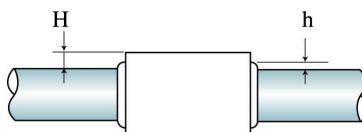


그림 2.5.3.9.7③ 비드 높이(h) 및 이음관의 높이(H)

(1-2-4) 용착작업은 홀더(Holder) 등을 사용하고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내부 경계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1-2-5) 시공이 불량한 용착 이음부는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 새들 용착(Saddle Fusion)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3-1) 접합부 전면에는 대칭형의 둥근 형상 이중비드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도록 한다.

(1-3-2) 비드의 표면은 매끄럽고 청결하도록 한다.

(1-3-3) 접합된 새들의 중심선과 배관의 중심선이 직각을 유지한다.

(1-3-4) 그림 2.5.3.9.7④와 같이 비드의 높이(h)는 이음관 높이(H)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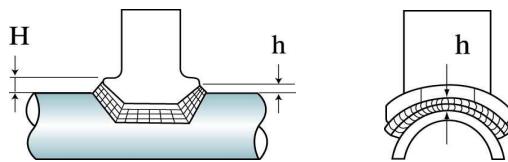


그림 2.5.3.9.7④ 비드의 높이(h) 및 이음관 높이(H)

- (1-3-5) 시공이 불량한 용착 이음부는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 (2) 전기용착 이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 (2-1) 전기용착에 사용되는 이음관은 KGS AA232(가스용 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품 또는 KS M 3515(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제품을 사용한다.
- (2-2) 소켓 용착 이음부는 배관과 일직선을 유지하고, 새들용착 이음매 중심선과 배관 중심선은 직각을 유지한다.
- (2-3) 소켓 용착작업은 홀더(Holder) 등을 사용하고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내부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 (2-4) 전기용착에 사용되는 이음관과 배관의 접합면 외부로는 용융물 또는 열선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2-5) 용착기는 용착과정의 전류변화가 표시되어야 하며, 급격한 전류변화 및 이음관 열선의 단선 · 단락시에는 용착을 즉시 중단한다.
- (2-6) 용착기는 전기용착에 사용되는 이음관의 사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7) 시공이 불량한 용착이음부는 절단 후 재시공한다.
- (3) 그 밖에 제작자가 제시하는 용착기준(가열온도, 가열유지시간, 냉각시간 등)을 준수한다.

2.5.4 배관 설치

2.5.4.1 배관 설치장소 선정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5.4.1.1 땅의 붕괴 우려지역 통과 제한

배관은 과거의 실적이나 환경조건의 변화(토지조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경이나 배수의 변화 등)로 땅의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5.4.1.2 지반침하 우려지역 설치 제한

- (1) 배관의 지반침하가 현저하게 진행 중인 곳이나 과거의 실적으로 미루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지반이 약한 곳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5.4.1.3 하천 또는 암거내 설치 제한

배관은 하천(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하수구등 암거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1)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1-2)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한다.
- (1-3)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 m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한다.
- (1-4) 배관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고압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안의 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빙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하천 또는 수로와 병행하여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1)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로 건축물까지 1.5 m 이상을 유지한다.
- (2-2) 배관은 지반의 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한다.
- (2-3) 성토하였거나 절토한 경사면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흙이나 돌등이 흘러 내려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매설한다.
- (2-4) 배관 입상부·지반급변부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는 곡관의 삽입·지반의 개량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5) 굴착 및 되메우기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3) 하천 또는 수로와 병행하여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5.4.1.3(3-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1) 배관은 주택·학교·병원·철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확보를 위해 유지하여야 할 수평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3-1-1) 주택·학교·병원·철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표 2.5.4.1.3①에 열거한 시설(당해 가스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된 계기실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확보상 필요한 수평거리는 표 2.5.4.1.3①에 열거한 거리이상의 거리로 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으로서 적절한 보강을 하였을 때와 정압기실 내에 설치한 배관의 수평거리는 표 2.5.4.1.3①에 열거한 거리이하로 할 수 있다.

표 2.5.4.1.3① 시설별 수평거리

호	시설	수평거리(m)
1	철도(화물수송으로만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30
2	도로(공업전용지역내에 있는 도로를 제외한다)	30
3	학교,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사설강습소	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심신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30
5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30
6	공공공지(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또는 도시공원(전용 공업지역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제외한다)	30
7	극장, 교회,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	30
8	백화점,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그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 000 m ² 이상인 곳	30
9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70
10	주택(앞 각호에 열거한 것 또는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앞 각호에 열거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곳	30

(3-1-2) 상용압력이 1 MPa미만인 배관의 안전확보상 필요한 수평거리는 2.5.4.1.3(3-1-1)의 규정에 관계없이 2.5.4.1.3(3-1-1)의 표 2.5.4.1.3①에 열거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수평거리로부터 각각 15 m를 뺀 거리로 한다.

(3-1-3) 지상배관의 주위에 2.5.4.1.3(3-1-1)의 표 2.5.4.1.3①에 열거한 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2.5.4.1.3(3-1-1)이나 2.5.4.1.3(3-1-2)에 따른 수평거리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2.5.4.1.3(3-1-1)이나 2.5.4.1.3(3-1-2)에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수평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3-1-3-1)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에 설치된 배관의 경우 최소 수평거리는 표 2.5.4.1.3②에 따른 거리

(3-1-3-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에 설치된 배관의 경우 최소 수평거리는 2.5.4.1.3(3-1-1)이나 2.5.4.1.3(3-1-2)에 의한 수평거리의 1/2의 거리

(3-2) 배관의 양측에는 표 2.5.4.1.3②에 의한 상용압력구분에 따른 폭을 유지한다. 다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지의 폭을 초과하여 공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지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2.5.4.1.3② 상용압력에 따른 공지의 폭

상 용 압 力	공지의 폭
0.2 MPa 미만	5 m
0.2 MPa 이상 1 MPa 미만	9 m
1 MPa 이상	15 m

[비고]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3-3) 배관은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하도록 한다.

(3-4) 2.5.4.1.3(3-3)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변형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3-6)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한다.

(3-7) 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2.5.4.1.4 PE배관 설치장소 제한

PE배관은 온도가 40 °C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이프슬리브 등을 이용하여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온도가 40 °C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5.4.2 배관 매몰설치

2.5.4.2.1 매설 깊이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3)에 따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2) 철도의 횡단부 지하에는 지면으로부터 1.2 m 이상인 깊이에 매설하고 또한 강제의 케이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 (3) 하천 밑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④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 m 이상, 소하천 ·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 m 이상,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4) 하천의 바닥이 경암으로 이루어져 배관의 매설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배관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3)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거리는 1.2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4-1) 배관을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 (4-2)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2.5.4.2.2 연약지반 기초보강

약지반에 설치하는 배관은 모래기초 또는 그 밖의 단단한 기초공사 등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한다.

2.5.4.2.3 배관의 기울기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를 따르고 도로가 평탄한 경우에는 1/500 ~ 1/1000 정도의 기울기로 한다.

2.5.4.2.4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 하수관거 ·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0.3 m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2.5.4.2.5(1-1)과 2.5.4.2.5(1-2)에서 정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써 2.5.4.2.5(2)에서 정한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보호한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4.2.5 매설깊이 미달배관 보호조치

지하구조물 ·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2.5.4.2.1(1)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하는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 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의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배관의 매설심도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재질 · 설치방법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배관을 보호한다.
 - (1-1) 배관의 재질이 강재인 경우에는 배관의 재질과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금속재의 보호관 또는 2.5.4.2.6에 적합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1-2) 배관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2.5.4.2.5(1-1)에 의한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2.5.4.2.6에 적합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1-3) 2.5.4.2.5(1-1)과 2.5.4.2.5(1-2)에 의한 보호관 또는 보호판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과는 0.3 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2.5.4.2.5(3)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내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호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1) 보호관의 안지름은 가스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2-2) 보호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해진 값 이상으로 한다.

(2-2-1) 보호관의 재료가 내충관과 동일한 경우

$$P_2 \leq P_1 \text{ 일 때, } t_2 = (t_1 - c) \frac{d_2}{d_1}$$

$P_2 > P_1$ 일 때, P_2 에 대응하는 두께 (부식여유두께를 제외)

(2-2-2) 보호관의 재료가 가스관과 다른 경우

$P_2 \leq P_1$ 일 때, P_1 에 대응하는 두께 (부식여유두께를 제외)

$P_2 > P_1$ 일 때, P_2 에 대응하는 두께 (부식여유두께를 제외)

2.5.4.2.5(2-2-1)과 2.5.4.2.5(2-2-2)에서

P_1 : 가스관내의 압력

P_2 : 보호관내의 압력

t_1 : 가스관의 두께

t_2 : 보호관의 두께

d_1 : 가스관의 안지름

d_2 : 보호관의 안지름

c: 부식여유 두께

(3) 방호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매설깊이 미확보 시 설치하는 방호구조물에 대하여는 2.5.4.2.5(3-2)와 2.5.4.2.5(3-3)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방호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3-2) 방호구조물은 하천 또는 수로 및 배관의 구조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이 경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끝 부분을 폐쇄한다.

(3-3) 방호구조물이 텁넬 형식인 경우에는 그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가스배관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피복부위와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는 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은 가스배관의 부양 또는 선박의 닻내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조치를 한다.

(4-1)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부에 들어있는 공기 및 물의 중량을 포함한다)의 비중은 주위의 흙이 사질토인 경우에는 물의 비중이상이 되도록 하고 점토질인 경우에는 KS F 2303(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에 의한 액성한계에서 흙의 단위체적 중량이상으로 한다.

(4-2) 앵커 등을 사용하여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을 고정한다.

(4-3) 흙의 교란 또는 크리프에 의하여 부상될 우려가 없는 깊이에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을 설치한다.

(4-4) 방호구조물은 충분한 깊이에 케이싱턴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5.4.2.6 보호판 설치

배관의 매설심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및 타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호판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보호판에는 직경 30mm 이상 50mm 이하의 구멍을 3m 이하의 간격으로 뚫어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3) 보호판은 배관의 정상부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의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가접하거나 연결절재 고리로 고정 또는 겹침 설치하는 등에 의하여 보호판과 보호판이 이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호판은 쇼트브라스팅 등으로 내·외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료(Primer)를 1회 이상 도포한 후, 도막두께가 80μm 이상 되도록 에폭시타입 도료를 2회 이상 코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청 및 코팅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다.

(5) 보호판의 치수는 표 2.5.4.2.6과 그림 2.5.4.2.6과 같다.

표 2.5.4.2.6 보호판의 치수

파이프 관경	치 수(mm)					
	A	B	L	R(곡률반경)	α (내각)	T
D	D+100	100	1500이상	5~10	90° ~135°	※4

[비고] 1. ※는 고압배관일 경우에는 6mm이상
2.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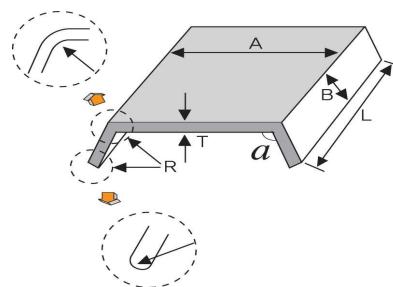


그림 2.5.4.2.6 보호판의 치수

2.5.4.2.7 수취기 박스 침수방지조치

수취기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는 침수방지조치를 한다.

2.5.4.2.8 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

배관을 매설하는 때에는 그림 2.5.4.2.8 및 다음 기준에 따라 되메움 작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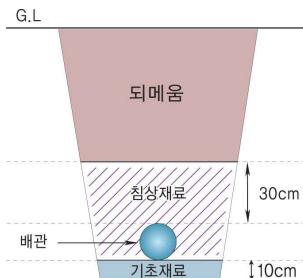


그림 2.5.4.2.8 되메움 구조

- (1) 배관을 매설하는 지반이 연약지반이 경우에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하부에는 모래(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콘크리트)규정에 의한 염분농도가 0.04 % 이하일 것) 또는 19 mm 이상(순환골재의 경우에는 13mm 초과)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어느 하나의 재료(이하 “기초재료” 라 한다)를 사용한다.
 - (2-1)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 실트 ·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험 · 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순환골재 또는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적합하게 생산한 순환골재
 - (2-3) 건설재료시험 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인공토양
- (3)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방향 및 횡방향에서 지지하고 하중을 기초 아래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배관하단에서 배관 상단 30 cm(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10 cm)까지에는 2.5.4.2.8(2)의 기준에 따른 모래 또는 재료(이하 “침상재료” 라 한다)를 포설한다.
- (4)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침상재료상단에서 도로노면까지에는 암편이나 굵은 돌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이하 “되메움재” 라 한다)을 포설한다. 다만, 유기질토(이탄등) · 실트 ·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기초재료와 침상재료를 포설한 후 되메움재를 포설하며, 되메움 공정에서는 배관상단으로부터 30 cm 높이마다 다짐작업을 한다. 다만,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 노반층의 다짐은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흙의 합수량이 다짐에 부적당할 경우에는 다짐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6) 다짐작업은 콤팩터, 래머 등 현장상황에 맞는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하고, 불균등한 다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에 걸쳐 균등하게 실시한다. 다만, 폭 4 m 이하의 도로 등은 인력다짐으로 할 수 있다.

2.5.4.2.9 PE배관 매몰 설치

PE배관은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PE배관의 굴곡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곡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 (2) PE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 · 로케팅와이어 (전선(나전선은 제외한다)의 굽기는 6mm 이상) 등을 설치한다.

2.5.4.3 배관 노출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4.3.1 입상관 설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 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33 mm 이상의 것에는 3 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 등에 의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2-1) “ㄷ”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에 의한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①과 같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 방호철판의 두께는 4 mm 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1-2) 방호철판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1-3) 방호철판 외면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에 의해 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1-4) 방호철판의 크기는 1 m 이상으로 하고 앵커보울트 등에 의해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2-1-5) 방호철판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림 2.5.4.3.3① “ㄷ”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에 의한 방호구조물

(2-2) 파이프를 “ㄷ” 형태로 가공한 강관제 구조물에 의한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②와 같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 방호파이프는 호칭지름 50 A 이상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2) 강관제 구조물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2-3) 강관제 구조물 외면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에 의해 도시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2-4) 그 밖에 강관제 구조물의 크기 및 설치방법은 (2-1-4)와 (2-1-5)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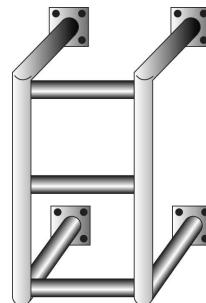


그림 2.5.4.3.3② 파이프를 “ㄷ” 형태로 가공한 강관제 구조물에 의한 방호구조물

(2-3) “ㄷ” 형태의 철근콘크리트재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③과 같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 철근콘크리트재는 두께 10 cm 이상, 높이 1 m 이상으로 한다.

(2-3-2) 철근콘크리트재 구조물 외면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에 의해 도시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3-3) 철근콘크리트재 구조물은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2-3-4)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방호구조물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림 2.5.4.3.3③ “ㄷ” 형태의 철근콘크리트재 방호구조물

(3)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설치한다.

(4) 옥외 공동구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 및 그 부근에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4-1) 공동구벽의 관통부는 배관 바깥지름에 5 cm를 더한 지름 또는 배관의 바깥지름의 1.2배의 지름 중 작은 지름이상의 보호관을 설치한다.

(4-2) 보호관과 배관과의 사이에는 기횡고무 등을 충전하는 등에 의해 공동구 내외에서 배관에 작용하는 응력이 상호간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4-3)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2.5.4.3.4 교량에 배관 설치

교량 등에 설치하는 가스배관 및 횡으로 설치하는 가스배관은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관을 설치·고정 및 지지를 한다.

- (1) 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열응력과 수직 및 수평 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설치한다.
- (2) 배관의 재료는 강재를 사용하고 접합은 용접으로 하도록 한다.
- (3) 배관 지지대는 배관 하중 및 축방향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하고 지지대의 부식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설치한다.
- (4) 지지대, U볼트 등의 고정장치와 배관 사이에는 고무판, 플라스틱 등 절연물질을 삽입한다.
- (5) 배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지지대의 최대지지간격은 표 2.5.4.3.4 을 기준으로 하되, 호칭지름 600 A를 초과하는 배관은 배관처짐량의 500배 미만이 되는 지점마다 지지한다.

표 2.5.4.3.4 배관관경별 지지간격

호칭지름(A)	지지 간격(m)
100	8
150	10
200	12
300	16
400	19
500	22
600	25

(6) 기타 교량 등에 설치되는 배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할 수 있다.

2.5.4.4 배관 수중설치

배관을 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박·파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4.4.1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닻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해선박의 크기 및 해저토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깊이에 매설한다.

2.5.4.4.2 해저나 하천 등에서 물의 유동으로 인하여 뺄상태로 될 수 있는 토양 중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때의 배관의 비중을 다음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하고, 앵커 등으로 배관의 부상이나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1) 사질토의 경우에는 물(해저의 경우는 해수)의 비중이상의 값

(2) 점토질의 경우에는 액성한계에 있어서의 토양의 단위체적 중량 이상의 값

2.5.4.4.3 파도의 영향을 받는 접안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도나 부유물 등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방파책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다.

2.5.4.4.4 하천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깊이에 매설한다.

2.5.4.4.5 수로가 불안정한 강바닥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부분에 설치된 배관과 수심이 깊은 부분에 설치된 배관이 수평으로 되도록 매설한다.

2.5.4.5 배관 실내설치

2.5.4.5.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사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금속제의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2.5.4.5.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동관(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2.5.4.5.3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절연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5.5 부대설비 설치(해당 없음)

2.5.6 배관설비 성능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한다.

2.5.6.1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내압성능을 갖도록 한다.

2.5.6.2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성능(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7.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 · 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줄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정압기 기준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압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 정압기실 재료

정압기실의 재료는 정압기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철근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2.6.2 정압기실 구조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2.6.2.1 정압기실 내부 공간의 크기는 정압기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크기 이상으로 한다.

2.6.2.2 정압기실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6.2.3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침수방지조치를 한다.

2.6.3 정압기실 두께 및 강도(해당 없음)

2.6.4 정압기 설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6.5 정압기 성능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은 최고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kPa중 높은 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시공감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자율적인 검사시에는 사용압력이상의 압력에서 누출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7 연소기 기준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은 제외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00 000kcal/h(837MJ)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종자가 관리하는 것
- (2) 사용연료가 다르거나, 가스소비량이 200 000kcal/h (837MJ)를 초과하는 기기와 같이 동일 층의 동일 실에 설치한 것
-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ガ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것

2.7.1.2 가스보일러 공통 설치기준

가스보일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2.1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7.1.2.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7.1.2.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 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밀폐식보일러
- (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2.7.1.2.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사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ガ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m²마다 300 cm²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7.1.2.5 전용보일러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7.1.2.6 전용보일러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 · 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덕트(후드)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7.1.2.7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2.7.1.2.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2.7.1.2.9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사공지침에 따른다.

2.7.1.2.10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 · 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표 2.7.1.2.10과 같이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09.5.15>

표 2.7.1.2.10 시공표지판

시 공 표 지 판		
시 공 자	명 칭 또 는 상 호	
	시 공 자 등 록 번 호	
	사 무 소 소 재 지	
	시 공 관 리 자 성 명	(전화번호)
보 일 러	제 조 자 명	
	모 델 명 및 기 종	
	제 조 번 호	
시 공 내 역	설 치 기 준 적 합 여 부	
	시 공 년 월 일	
	특 기 사 항	

※ 유의 사항

1.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규격) 12cm×9cm
 - (재료) 100g/m²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2.7.1.2.11 2.7.1.1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 · 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표 2.7.1.2.11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사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 g/m²)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표 2.7.1.2.11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제 호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사 용 자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주 소			
	④ 건축물소재지			
시 공 자	⑤ 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⑦ 대표자	⑧ 전화번호		
	⑨ 사무소소재지			
건축물	⑩ 분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⑪ 규 모	건축면적(), 난방면적(), (평형) (세대), (층수 층)		
보 일 러	⑫ 제조자명	⑬ 제조번호		
	⑭ 모델명	⑮ 급 · 배기방식		
	⑯ 사용가스종류	⑰ 난방출력		
시 공 내 역	⑱ 배기통재료	⑲ 배기통	높이 : m 직경 : mm	
	⑳ 보일러설치장소	전용보일러실, 기타()		
	㉑ 시공년월일	년	월	일
시 공 · 확 인 사 항	㉒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㉓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㉔ 가스누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㉕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㉖ 배기기사ς 적정배기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㉗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㉘ 기타 특기사항			
	KGS FU 551 2.7.1.2.11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p>상기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공자가 휴업 ·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p>				
<p>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p> <p>(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p>				

2.7.1.2.1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 · 비 · 바람 등에 의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1.2.1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기사 및 응축수에 내열 ·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7.1.2.14. 배기통이 자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7.1.2.15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 및 공동배기구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한다.

2.7.1.2.16. 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파구 직상부로 한다.

2.7.1.2.17.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봉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7.1.3 반밀폐식 보일러 설치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3.1. 자연배기식

(1) 단독배기통 방식

(1-1)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한다.

$$h = \frac{0.5 + 0.4n + 0.1\ell}{(\frac{1,000Av}{6Q})^2}$$

여기에서,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cm²)

Q : 가스소비량(kca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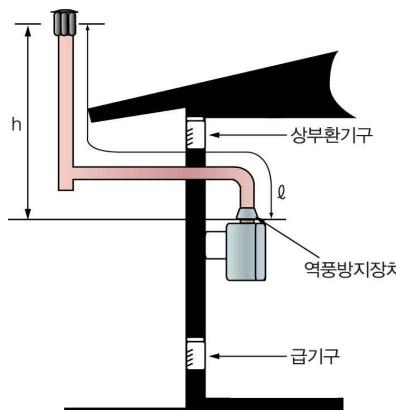


그림 2.7.1.3.1① 배기통의 높이]

(1-2)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1-3)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입상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1-4)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1-5)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1-6)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1-7)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아니하도록 한다.

(1-8)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1-10)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1-11) 배기톱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1-12)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시키는 구조로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등으로 한다.

(1-1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1-1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1-1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1-1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챔버방식

(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설치벽·측면·차단판·천정·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mm, 상방 600 mm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2-4) 챔버급기구의 크기

$$\text{급기구유효면적} = \text{유효개구면적} - \text{배기통 단면적}$$

(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mm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mm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3) 복합배기통 방식

(3-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으로 인해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2) 자연배기식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로 한다.

(3-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에 있어서는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3-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mm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로 공용부에 접속한다.

(3-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mm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3-6) 기타 필요한 사항은 2.7.1.3.1(1)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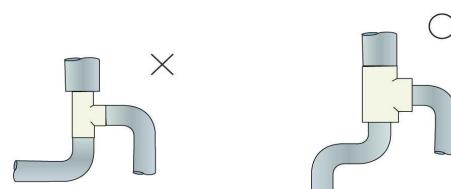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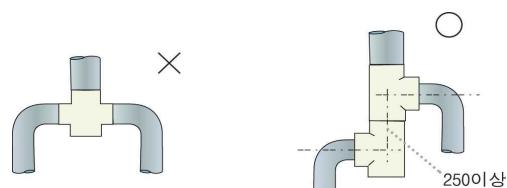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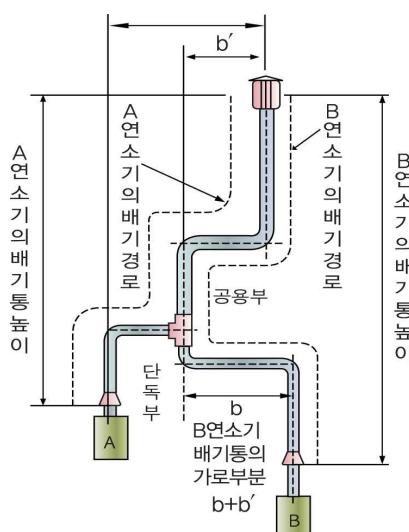


그림 2.7.1.3.1②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4) 공동배기방식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시키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배기통 방식으로 설치한다.

(4-2)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이상으로 한다.

$$A = Q \times 0.6 \times K \times F + P$$

여기에서,

A :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mm^2)

Q : 보일러의 가스소비량 합계(kcal/h)

K : 형상계수 [표 2.7.1.3.1①]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2.7.1.3.1②]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mm²)

표 2.7.1.3.1① 형상계수

내부면이 원형일때	1.0
내부면이 정사각형일때	1.3
내부면이 직사각형일때	1.4

표 2.7.1.3.1②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1	1.00	12	0.80
2	1.00	13	0.80
3	1.00	14	0.79
4	0.95	15	0.79
5	0.92	16	0.78
6	0.89	17	0.78
7	0.86	18	0.77
8	0.84	19	0.76
9	0.82	20	0.76
10	0.81	21이상	0.75
11	0.80		

(4-3) 공동배기구는 굴곡없이 수직으로 설치하고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하고,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4-4) 동일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4-5)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4-6)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별도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 재료가 금속재일 때는 보온조치를 한다.

(4-7) 공동배기구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4-8)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9) 공동배기구에 접속하는 보일러의 배기통높이 및 수평 길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9-1)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30 cm 이상 60 cm 미만인 경우에는 수평길이를 1 m 이하로 한다.

(4-9-2)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60 cm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통 수평 길이를 5 m 이하로 한다.

(4-10)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 한다.

(4-11) 공동배기구는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와 접하고 있는 면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실내측벽에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처리를 한 구조로 하고,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최초로 공동배기구에 연결하기 전에는 연막을

- 주입하는 등의 시험에 의하여 공동배기구의 기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4-12) 공동배기구 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 (4-13) 공동배기구 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 (4-14)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 (4-15)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2.7.1.3.1(1-13)부터 2.7.1.3.1(1-16)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 (4-16) 공동배기구의 배기통 톱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7.1.3.1(1)에 따른다.
 - (4-17)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공동배기구 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한다.
 - (4-18)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는 공동배기구에 함께 접속하지 아니한다.

2.7.1.3.2. 강제배기식

(1). 단독배기통방식

- (1-1)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또는 배기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 (1-2) 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1-3) 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직경 16 mm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 (1-4) 배기통 톱의 전방·측면·상하주위 60 c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30 cm) 이내에는 가연물이 없도록 한다.
- (1-5)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60 c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 (1-6)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2.7.1.3.1(1-13)부터 2.7.1.3.1(1-16)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 챔버방식

챔버방식은 2.7.1.3.1(2)의 기준에 따른다.

(3). 공동배기방식

- (3-1) 2.7.1.3.1(4-1)부터 2.7.1.3.1(4-8)까지와 2.7.1.3.1(4-10)부터 2.7.1.3.1(4-1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 (3-2) 공동배기구내에 설치하는 배기통 톱은 선단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 (4) 자연배기식보일러에는 강제배기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배기팬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검사를 받은 자연배기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강제배기팬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배기팬을 부착한 자연배기식보일러는 강제배기식보일러로 본다

2.7.1.4. 밀폐식 보일러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4.1. 일반사항

- (1) 밀폐형 보일러는 급·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하여 설치한다.
- (2) 급·배기 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 (3) 급·배기 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4)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급·배기 톱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5) 급·배기 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

톱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 (6)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2.7.1.4.2. 자연급·배기식

(1) 외벽식

(1-1) 급·배기 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충분히 벽외부로 나오도록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한다.

(1-2) 급·배기 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500 mm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3) 급·배기 톱은 전방 150 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4) 급·배기 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 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5) 급·배기 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mm 위쪽으로 한다.

(1-6) 급·배기 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mm 이상으로 한다.

(1-7) 급·배기통 톱 개구부로 부터 60 c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 캠버식

(2-1) 2.7.1.3.1(2)의 기준에 따른다.

(2-2) 캠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다음의 수치이상으로 한다.

바 닥 설 치 형	700 mm
벽 결 이 형	200 mm

(3) 덕트식

(3-1) 공통사항

(3-1-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 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1-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1-3) 급·배기 톱의 관통부는 급·배기 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1-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3-1-5) 덕트를 시공하는 때에는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3-1-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되는 것으로 한다.

(3-1-7) 급·배기덕트는 시공할 때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건축 중 덕트 내에 이물질(몰타르 등)이 들어가 내면에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1-8) 덕트 내에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1-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직경 16 mm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3-2) U덕트식

(3-2-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은 수치이상으로 한다.

$$A = \frac{Z \times F \times Q}{1,000}$$

여기에서,

A : 단면적(cm^2)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text{cm}^2/1000\text{kcal}/\text{h}$) [표 2.7.1.4.2.]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2.7.1.3.1②]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kcal/h)

표 2.7.1.4.2. 단면계수(Z)

층수	단면 계수(Z)	비 고	층수	단면 계수(Z)	비 고
3	21.6	각층의 높이가	12	26.2	각층의 높이가
4	24.3	2.5 ~ 3.0 m	13	26.1	2.5 ~ 3.0 m
5	25.4	건물에 적용	14	26.0	건물에 적용
6	25.7	한다.	15	25.9	한다.
7	26.1		16	25.9	
8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3-2-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3-2-3) 덕트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대하여 평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3-2-4) 덕트의 아래 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3-2-5) 덕트의 아래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6) 덕트의 아래 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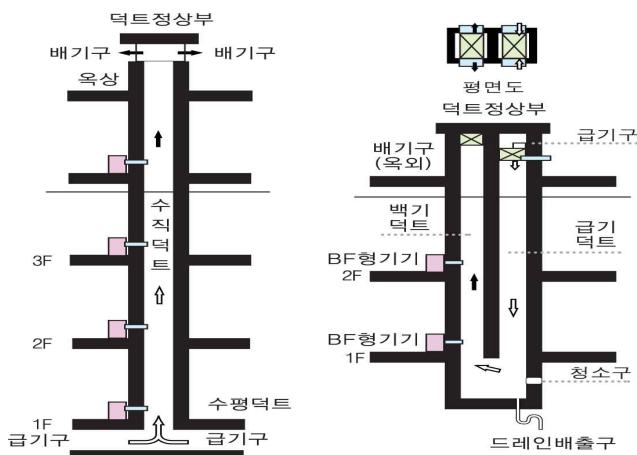


그림 2.7.1.4.2. SE 및 U덕트의 설치 예

(3-3) SE덕트식

(3-3-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하도록 한다.

(3-3-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여 풍압에 대하여 평형이 되도록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히

배치한다.

(3-3-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로 한다.

(3-3-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3-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3-3-6) 기타 필요한 사항은 2.7.1.4.2.(3-2)에 따른다.

2.7.1.4.3. 강제급 · 배기식

(1) 2.7.1.4.2(1-1)부터 2.7.1.4.2(1-7)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2) 급 · 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급 · 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2.7.2 그 밖의 설치기준 <개정 09.5.15>

2.7.2.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2.7.2.2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

2.7.2.3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 · 석면 그 밖에 불연성인 것으로 한다.

2.7.2.4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2.7.2.5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7.2.6 밀폐형연소기는 급기통 · 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하여 설치한다.

2.7.2.7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그 배기팬의 배기기스와 접촉하는 부분은 불연성재료로 한다.

2.8 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과압안전장치 설치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8.2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2.8.2.1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설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가스누출검지통보 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8.2.1.1 가스누출경보기 기능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경보기의 기능은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 (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1/4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 (4)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8.2.1.2 가스누출경보기 구조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1) 가스누출경보기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분리형 공업용으로 한다.
- (2) 가스누출경보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 (3)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8.2.1.3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 (1) 검지부 설치장소는 정압기실 내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으로 한다.
- (2)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그 밖에 설비의 구조 등에 적합한 곳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한다.
 - (2-1)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 (2-2) 주위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곳.
 - (2-3)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 (2-4) 차량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 (3) 검지부의 설치높이는 가스의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의 높이 등의 조건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 (4)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곳으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한다.

2.8.2.1.4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개수

정압기실(지하정압기실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수는 바닥면 둘레 20 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로 한다.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8.2.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m² 이상인 가스사용 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1.9에 따른 월사용예정량이 2 000 m³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2).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2.8.2.2.3(4)에서 규정하는 경우
-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2.8.2.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구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및 제어부로 구성한다.

2.8.2.2.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방법

(1) 검지부의 설치

(1-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30 cm 이하로 한다.

(1-2) 다음 장소에는 검지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2-1) 출입구의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1-2-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이내의 곳

(1-2-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2) 제어부의 설치

제어부는 가스사용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 또는 안전관리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단부의 설치

(3-1) 차단부는 다음의 주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동일 공급배관의 상 · 하류에 이중으로 차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외의 것은 배관용 밸브로 할 수 있다.

(3-1-1) 동일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 배관

(3-1-2) 동일건축물 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 배관

(3-1-3) 동일건축물의 동일층 내에서 2 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 배관. 다만, 동일한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 배관으로 할 수 있다.

(3-2) 차단부는 2.8.2.2.3 (3-1-1)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부, 2.8.2.2.3 (3-1-3)의 경우에는 가스사용 실의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장소

2.8.2.2.1(2)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과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이하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2.8.2.2.3(4-1)과 2.8.2.2.3(4-2)에 정하는 가스사용시설로 하되 2.8.2.2.3(4-3)에 서 정하는 조치를 한다.

(4-1)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

(4-1-1) 건조로

(4-1-1-1) 수분건조로 : 제지, 섬유, 식품, 약품, 주물사(砂) 건조로 등

(4-1-1-2) 도장건조로 : 도료, 바니스, 인쇄 잉크건조로 등

(4-1-1-3) 가열장치건조로 : 접착제, 합판, 골재 및 수지성형건조로 등

(4-1-2) 열처리로

(4-1-2-1) 금속열처리로(爐) : 담금질(Quenching 또는 Hardening)로, 어니일링(Annealing)로, 템퍼링(Tampering)로, 노오말라이징(Normalizing)로, 균질화(Homogenizing)로, 침탄(Carbonizing)로, 질화(Carbonitriding)로

(4-1-2-2) 유리, 도자기열처리로

(4-1-2-3) 분위기ガス발생로

(4-1-3) 가열로 등

(4-1-3-1) 금속가열로 : 단조, 압연, 균열, 예열, 기타가열로 등(절단장치 등)

(4-1-3-2) 유리, 도자기로 및 가열장치 등

(4-1-4) 용융로

(4-1-4-1) 금속용융로

(4-1-4-2) 유리용융로

(4-1-4-3) 기타용융로

(4-1-5) 식품가공시설

(4-1-6) 발전용시설

(4-1-7) 섬유모소기, 염색기, 유리섬유 코팅 등 기타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

(4-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

(4-2-1)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

(4-2-2)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시설

(4-2-3) 체육관, 수영장, 농수산시장 등 상가와 유사한 가스사용시설

(4-2-4) 경기장의 성화대

(4-2-5) 상 · 하방향, 전 · 후방향, 좌 · 우방향 중에 3방향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가스사용시설

(4-3) 2.8.2.2.3(4-1)과 2.8.2.2.3(4-2)에 의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대상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4-3-1).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에 설치한다.

(4-3-2). 2.8.2.2.3(4-1), 2.8.2.2.3(4-2-1) 및 2.8.2.2.3(4-2-2)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통풍이 불량하고 가스가 누출하여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8.2.2.4 검지부의 설치개수

검지부의 설치개수는 연소기(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경우에는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연소기에 한한다)버너의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 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 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연소기설치실이 별실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되도록 한다.

2.8.3 긴급차단장치 설치 (내용 없음)

2.8.4 역류방지장치 설치 (해당 없음)

2.8.5 역화방지장치 설치 (해당 없음)

2.8.6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2.8.6.1 경보장치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8.6.2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개폐통보장치

정압기실에는 출입문 및 정압기출구의 압력이 이상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그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여부(기준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춘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개폐통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7 오발진방지장치설치 (해당 없음)

2.8.8 전기방폭설비 설치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접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 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8.9 환기설비 설치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정압기실의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8.9.1 자연환기설비 설치

2.8.9.1.1 환기구의 위치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는 바닥면에 접하도록 하고,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천정 또는 벽면상부에서 30 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8.9.1.2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 m² 마다 300 cm²(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1개 환기구의 면적은 2 400 cm²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붕과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으로 한다.

2.8.9.1.3 사방을 방호벽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는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한다.

2.8.9.1.4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통풍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09.5.15>

- (1)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하여 설치한다.
- (2)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내에 설치한다.
-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은 100 mm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 (4)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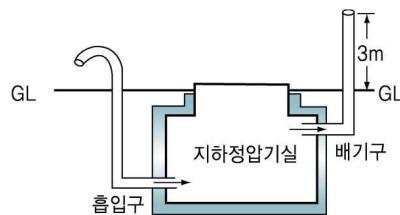


그림 2.8.9.1.4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2.8.9.2 기계환기설비 설치

2.8.9.1에 따라 통풍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8.9.2.1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 m² 마다 0.5 m³/분 이상으로 한다.

2.8.9.2.2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천정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2.8.9.2.3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배기ガ스로서 배기ガ스 방출구를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 (2)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어 정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방출구를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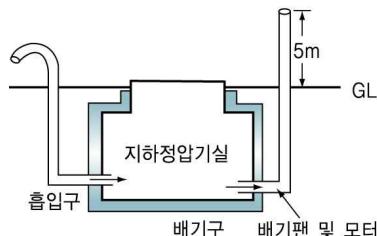


그림 2.8.9.2.3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2.8.9.2.4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의 기계환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09.5.15>

- (1)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하여 설치한다.
- (2)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내에 설치한다.
-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은 100 mm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 (4)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2.8.10 부식방지설비 설치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202(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에 따라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한다.

2.8.11 정전기제거설비 설치(내용 없음)

2.8.12 전도방지장치 설치(해당 없음)

2.8.13 과류방지밸브 설치(내용 없음)

2.8.14 재해예방설비 설치(내용 없음)

2.8.15 불순물제거장치 설치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제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8.16 동결방지조치

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인해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한다.

2.9 피해저감설비 기준

2.9.1 방류둑 설치 (내용 없음)

2.9.2 방호벽 설치 (내용 없음)

2.9.3 살수장치 설치 (내용 없음)

2.9.4 제독설비 설치 (내용 없음)

2.9.5 중화 · 이송설비 설치 (내용 없음)

2.9.6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2.9.6.1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

2.9.6.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2.9.6.1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 m 이내에 그 정압기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9.7 소화설비 설치 (내용 없음)

2.9.8 통행시설 설치 (내용 없음)

2.9.9 온도상승방지장치 설치 (내용 없음)

2.10 부대설비 기준

2.10.1 계측설비 설치 (내용 없음)

2.10.2 비상전력설비 설치(내용 없음)

2.10.3 통신설비 설치 (내용 없음)

2.10.4 운영시설물 설치(내용없음)

2.10.5 용기고정장치 설치(해당 없음)

2.10.6 배기덕트 설치(내용 없음)

2.10.7 바이패스관 설치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한다.

2.10.8 압력기록장치 설치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 ·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11 표시기준

2.11.1 경계표지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압기실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1.1.1 경계표지는 정압기실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2.11.1.2 경계표지의 크기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11.1.3 경계표지판은 검정·파랑·적색 글씨 등으로 그림 2.11.1.3의 예와 같이 시설명, 공급자, 연락처 등을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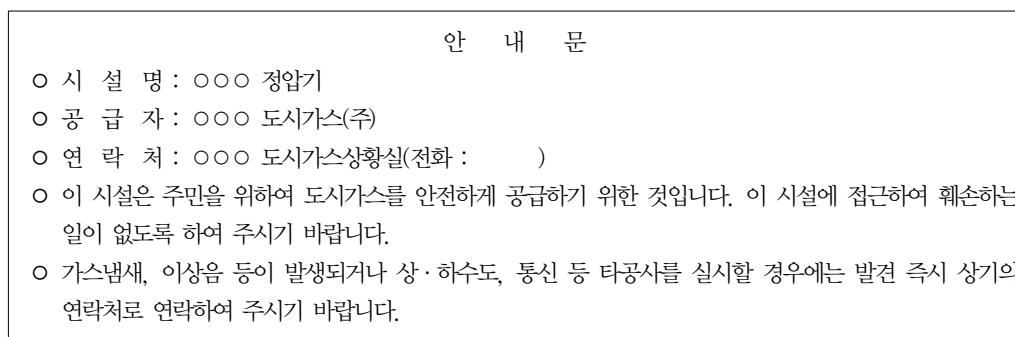


그림 2.11.1.3 경계표지의 예

3. 기술기준

3.1 안전유지기준(내용 없음)

3.2 이입 및 충전기준 (해당 없음)

3.3 점검기준

3.3.1 전체시설 점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09.5.15>

3.3.2 기초 점검 (내용 없음)

3.3.3 저장설비 점검 (해당 없음)

3.3.4 가스설비 점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3년에 1회 이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1) 압력조정기의 정상 작동유무
- (2)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 및 손상유무
- (3) 압력조정기의 몸체 및 연결부의 가스누출유무
- (4) 격납상자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격납상자의 견고한 고정여부
- (5)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경우는 가스방출구의 실외 안전장소로 설치 여부

3.3.5 배관설비 점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09.5.15>

3.3.6 정압기 점검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3.3.7 연소기 점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09.5.15>

3.3.8 사고예방설비 점검

3.3.8.1 가스누출경보기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작동이 불량할 때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한다.

3.3.9 패해저감설비 점검 (내용 없음)

3.3.10 부대설비 점검 (내용 없음)

3.4 수리 · 청소 및 철거기준 (내용 없음)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1 중간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해당 없음)**4.1.2 완성검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4.1.2.1 1.6에 따른 용품사용제한의 확인**4.1.2.2 1.7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설치제한의 확인****4.1.2.3 2.1에 따른 배치의 확인****4.1.2.4 2.4에 따른 가스설비의 확인****4.1.2.5 2.5에 따른 배관설비의 확인****4.1.2.6 2.6에 따른 정압기의 확인****4.1.2.7 2.7에 따른 연소기의 확인****4.1.2.8 2.8에 따른 사고예방설비의 확인****4.1.2.9 2.9에 따른 피해저감설비의 확인****4.1.2.10 2.10에 따른 부대설비의 확인****4.1.2.11 2.11에 따른 표시의 확인****4.1.2.12 <삭제 09.5.15>****4.1.3 정기검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4.1.3.1 1.6에 따른 용품사용제한의 확인**4.1.3.2 2.1에 따른 배치기준 확인****4.1.3.3 2.4에 따른 가스설비의 확인****4.1.3.4 2.5.3.4에 따른 접합 이음쇠 확인(노출배관에 한함)**

4.1.3.5 2.5.4.1.2에 따른 배관 지반침하지역 설치여부 확인

4.1.3.6 2.5.4.1.3에 따른 하천 또는 암거내 배관 설치 확인

4.1.3.7 2.5.4.3에 따른 배관 노출설치

4.1.3.8 2.5.4.5에 따른 실내 설치배관의 확인

(2.5.4.5.1의 기준은 노출배관에 한함)

4.1.3.9 2.5.7에 따른 배관의 표시(노출배관에 한함)

4.1.3.10 2.7에 따른 연소기의 확인

4.1.3.11 2.8에 따른 사고예방설비의 확인

4.1.3.12 2.9에 따른 피해저감설비의 확인

4.1.3.13 2.10에 따른 부대설비의 확인

4.1.3.14 2.11에 따른 표시의 확인

4.1.3.15 3.3에 따른 시설점검의 확인

4.1.4 수시검사(해당 없음)

4.2 검사방법

4.2.1 중간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해당 없음)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4.2.2.1 완성검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4.2.2.1.1 배관재료

배관재료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4.2.2.1.2 지하매설 배관설치

지하매설배관의 매설깊이,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한다.

4.2.2.1.3 전기부식방지조치

- (1) 지하매설배관의 재질이 강관인 경우 T/B위치 등의 전기방식 시공여부확인과 전위를 측정한다.

4.2.2.1.4 건축물 내 배관

- (1) 배관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2)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배관의 고정간격 및 유지상태, 벽관통부의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상태를 확인한다.

4.2.2.1.5 입상관

- (1) 입상관과 화기와의 거리유지여부를 확인한다.
(2) 입상관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다.
(3) 입상관 밸브의 구조가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4.2.2.1.6 용접부 비파괴 시험 등

- (1) 비파괴시험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2) 밸브의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 KS표시 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한다.

4.2.2.1.7 가스계량기

- (1) 배관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2) 가스계량기와 화기와의 거리를 확인한다.
(3)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및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4.2.2.1.8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위치의 적정여부 및 원활한 작동상태의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4.2.2.1.9 중간밸브 등

퓨즈콕크 및 밸브의 설치여부 및 작동성능을 확인한다.

4.2.2.1.10 연소기의 설치방법

- (1) 연소기가 검사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개방형, 반밀폐형, 밀폐형 연소기의 적정한 설치 ·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4.2.2.1.11 정압기

- (1) 정압기실의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 안전밸브 방출관의 적정 높이의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3) 정압기 분해점검 실시상황을 확인한다.

4.2.2.1.12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의 설치장소, 조정용량, 방출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4.2.2.1.13 기밀시험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해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검사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기밀시험은 압력유지시간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고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2) 누출검사는 가스누출검지기 및 검지액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3-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한다. 다만, 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3-1-1) 최고 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길이가 15 m 미만인 배관 및 정압기 또는 그 부대설비로서 그 이음부와 동일재료, 동일치수 및 동일시공방법에 따르고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이상인 압력에서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4.2.2.1.13(4-1)이나 4.2.2.1.13(4-2)에 기재한 방법으로 기밀시험을 한 경우
 - (3-1-2)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및 정압기 또는 그 부대설비로서 4.2.2.1.13(4-1)이나 4.2.2.1.13(4-2)에 기재한 방법으로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 (3-2)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2-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및 그 부대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30 kPa 이하인 것은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할 수 있다.
 - (3-3) 기밀시험은 그 설비가 취성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한다.
 - (3-4) 기밀시험은 기밀시험압력에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
 - (3-5) 기밀시험에 종사하는 인원은 작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관측 등은 적절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실시한다.
 - (3-6) 기밀시험을 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4)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내관의 기밀시험은 4.2.2.1.13 (3)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매몰배관의 경우에는 4.2.2.1.13.(4-1)의 방법을 제외한다.
 - (4-1)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여부로 판정하는 방법
 - (4-2) 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농도가 0.2 % 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당해 검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매몰된 배관은 시험가스를 넣어서 12시간 경과한 후 판정한다.)
 - (4-3)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인 배관으로서 용접에 의해 접합되고 방사선투과시험에 의해 합격된 배관은 통과하는 가스를 시험가스로 사용하고 0.2 % 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당해 검지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한다(매몰된 배관은 시험가스를 넣어 24시간 경과한 후 판정한다), 이때에 시험압력은 4.2.2.1.13(3-2)에 불구하고 사용압력으로 할 수 있다.
 - (4-4) 표 4.2.2.1.13①에 열거한 압력측정기구의 종류와 시험할 부분의 용적 및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정한 기밀유지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측정압력차가 압력측정기구의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판정하는 방법(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온도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차에 대하여 보정한다)
 - (5)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내관의 기밀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 (5-1) 내관 중 기밀시험에 적절한 장소에 압력측정기구 및 압력발생기구 등을 전용이음관 또는 고무관 등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 (5-2) 밸브를 잠그고 압력발생기구 등을 사용하여 당해 내관에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등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에 이를 때까지 가압한 후 압력발생기구등과 내관과의 사이에 밸브를 잡그고 압력발생기구 등을 떼어낸다.

표 4.2.2.1.13① 압력측정기구별 기밀유지시간

압력측정기구	최고사용압력	용 적	기 밀 유 지 시 간
수은주 계이지	0.3MPa 미만	1m ³ 미만	2분
		1m ³ 이상 10m ³ 미만	10분
		10m ³ 이상 300m ³ 미만	V분(다면, 120분을 초과할 경우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계이지	저 압	1m ³ 미만	1분
		1m ³ 이상 10m ³ 미만	5분
		10m ³ 이상 300m ³ 미만	0.5×V분(다면, 60분을 초과한 경우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 력계	저 압	1m ³ 미만	4분
		1m ³ 이상 10m ³ 미만	40분
		10m ³ 이상 300m ³ 미만	4×V분(다면, 240분을 초과한 경우는 24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 기록계	저 압 중 압	1m ³ 미만	24분
		1m ³ 이상 10m ³ 미만	240분
		10m ³ 이상 300m ³ 미만	24×V분(다면, 1440분을 초과한 경우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 기록계	고 압	1m ³ 미만	48분
		1m ³ 이상 10m ³ 미만	480분
		10m ³ 이상 300m ³ 미만	48×V분(다면, 2880분을 초과한 경우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비고] 1. V는 피시험부분의 용적(단위 : m ³)이다. 2. 전기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는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는다.			

(5-3) 표 4.2.2.1.13②에 의한 내관의 내용적에 따라 기밀시험압력유지시간이상 4.2.2.1.13(5-2)의 상태를 유지하여 압력의 변동을 압력측정기구로 측정한다.

표 4.2.2.1.13② 내용적에 따른 기밀시험압력 유지시간

내 용 적	시험 압력유지시간
10 ℥ 이하	5분
10 ℥ 초과 50 ℥ 이하	10분
50 ℥ 초과	24분

(5-4) 4.2.2.1.13(5-3)의 상태로 측정한 결과 압력의 변동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5-5) 내관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노출 배관과 호스는 4.2.2.1.13(5-1)부터 4.2.2.1.13(5-4)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밤포액 등에 의한 누출시험으로 할 수 있다.

4.2.2.1.14 내압시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압력강하 및 이상변형,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1) 중압 이상인 배관의 내압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1)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압 이하의 배관, 길이 50m 이하로 설치되는 고압배관과 부득이한 이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할 수 있다.

(1-2) 공기 등의 기체의 압력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강관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하여 내압시험 전에 KS B 0845(강용 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그 등급분류가 2급(중압 이하의 배관은 3급) 이상임을 확인한다.

(1-3) 중압이상 강관의 양 끝부에는 아음부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배관용 앤드 캡(END CAP), 막음플랜지 등을 용접으로 부착하고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후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1-4) 내압시험은 당해 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한다.

(1-5)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가스시설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으로 하며, 규정 압력을 유지하는 시간은 5분에서 20분을 표준으로 한다.

(1-6) 내압시험을 공기 등의 기체로 하는 경우 압력은 일시에 시험압력까지 승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먼저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 후에는 상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내압시험 압력에 달하였을 때 누출 등의 이상이 없고, 그 후 압력을 내려 상용압력으로 하였을 때 팽창, 누출 등의 이상이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1-7) 내압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관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실시한다.

(1-8) 내압시험을 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9) 내압시험을 할 때 감독자는 시험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험 구간을 순회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중압 이상인 배관 중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가스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2-1)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아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시험에 합격된 아음관

(2-2) 길이가 15m 미만으로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 및 그 부대설비로서 그들의 아음부와 동일재료, 동일치수 및 동일시공방법으로 접합시킨 시험을 위한 관을 이용하여 미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가스시설로서 공기 · 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인 압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배관 및 그 부대설비

4.2.2.2 정기검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검사방법은 4.2.2.1과 같다. 다만, 4.2.2.1의 검사방법 중 4.2.2.1.1, 4.2.2.1.2, 4.2.2.1.6, 4.2.2.1.13, 4.2.2.1.14를 제외할 수 있다.

4.2.2.3 그 밖의 검사방법

4.2.2.1와 4.2.2.2 이외의 검사방법은 공사 사장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임시저장기준(해당 없음)

부록 A 1993.11.28일 이전 가스보일러설치기준**A. 가스보일러 설치기준****A1 공통사항**

A1.1 가스보일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A1.1.1 반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

A1.1.2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의 불연성인 것으로 한다.

A1.1.3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등을 통과하는 때는 금속외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A1.1.4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A1.1.5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한다.

A1.1.6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한다.

A1.2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다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A1.3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A1.4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불완전 연소의 경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의 보일러

(3) 전용급기구를 외기와 통하게 설치된 보일러

A1.5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A1.6 가스보일러 설치시 급·배기장치 등의 구조는 다음 A2 또는 A3의 기준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가스보일러 제작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른다.

A1.7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표1.7과 같은 시공표지판을 부착한다.

표 A1.7 시공표지판

시공표지판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관리자 성명	
가스보일러 제조사명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시공 년 월 일	
기타 특이사항	

[비고] (규격) 12 cm × 9 cm

(재료) 100 g/m²의 노랑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A1.7.1 (기재사항) 시공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 (2) 시공자 등록번호(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는 국가기술자격종목·등급 및 등록번호,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양성교육 이수번호)
- (3)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4) 시공관리자 성명
- (5) 가스보일러 제조사명
- (7)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 (8)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적합여부
- (9) 시공 년월일
- (10) 기타 특기사항

A1.7.2 (부착방법)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에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가스보일러 본체 중 보기 쉬운 장소에 단단하게 붙여야 한다.

A1.8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260 g/m²)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A2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2.1 자연배기식

A2.1.1 배기통

A2.1.1.1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재료인 것으로 한다.

A2.1.1.2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 이상인 것으로 한다.

$$h = \frac{0.5 + 0.4n + 0.1\ell}{(\frac{1,000Av}{6H})^2}$$

위 식에서 h, n, ℓ, Av, 및 H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cm²)

H : 가스소비량(kca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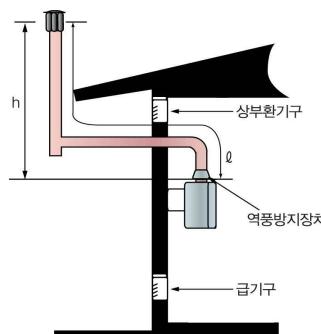


그림 A.1 배기통의 높이

A2.1.1.3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A2.1.1.4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입상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A2.1.1.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A2.1.1.6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 등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A2.1.1.7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A2.1.1.8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A2.1.1.9 배기통은 내부 청소를 위한 청소구를 설치한다.

A2.1.1.10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2.1.1.11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A2.1.1.12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A2.1.1.13 배기톱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90 cm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단부로부터 수평거리 1 m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타건물의 처마로부터 90 cm이상 높게 설치한다.

A2.1.1.14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시키는 구조로 다익형, H형, 경사H형, P형 등으로 한다.

A2.1.1.15 A1.4(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전용보일러실외에 자연배기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1차배기통 직상부에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A2.1.2 급기구 및 환기구

A2.1.2.1 급기구는 보일러에 설치된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A2.1.2.2 수시로 개방하도록 하는 구조의 급기구 또는 외기와 접하게 설치된 창 등으로서 급기에 이용되도록 한 구조의 개구부(수기 개방형 급기구)의 크기는 다음 식에 의하여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A_v = 0.12H \sqrt{\frac{3 + 5n + 0.2\ell}{h}}$$

여기에서,

A_v : 개구부의 면적(cm^2)

H : 가스소비량(kcal/h)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h : 배기통의 높이(m)

A2.1.2.3 상부 환기구의 면적은 가스소비량 1 000 kcal/h당 유효 개구면적 10 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36 000 kcal/h이하이고 또한 보일러가 설치된 실의 넓이가 1 m^2 당 가스소비량이 7 000 kcal/h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상부환기구로서 급기구를 가름할 수 있다.

A2.1.2.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A2.1.2.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이며, 급기구는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A2.1.2.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A2.1.2.7 지하실 등에서 급기팬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급기팬등의 능력은 이론가스배기량(1 000 kcal/h(0.085 kg/h)당 1.08 m^3)의 2배 이상으로 한다.

A2.2 챔버방식

A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A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A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 설치벽·측면·차단판·천정·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mm, 상방 600 mm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A2.2.4 챔버급기구의 크기

$$\text{급기구유효면적} = \text{유효개구면적} - \text{배기통 단면적}$$

A2.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mm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A2.2.6 배기통은 급기구면보다 20 mm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A2.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A2.3 강제배기식

A2.3.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

A2.3.1.1 배기팬

A2.3.1.1.1 배기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으로 한다.

A2.3.1.1.2 배기팬은 보일러 사용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A2.3.1.1.3 정전 또는 배기팬 고장 시에는 가스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A2.3.1.1.4 가스의 차단장치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된 경우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된 경우 생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A2.3.1.1.5 배기통에 설치된 배기팬의 배기통의 통기저항 및 옥외 풍압이상으로서 이론가스 배기량 (1 000 kcal/h (0.085 kg/hr)당 1.08 m³) 2배 이상으로 한다.

A2.3.1.1.6 자연 배기식 급·배기설비 중 보일러의 배기통에 부착되는 배기팬의 성능은 보일러의 연소 및 효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2.3.1.2 배기통

A2.3.1.2.1 배기통의 구경은 배기팬의 능력 이상으로 한다.

A2.3.1.2.2 배기통의 수평부는 경사가 있어 응축수를 외부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2.3.1.2.3 배기통 톱에는 새·쥐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직경 16 mm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A2.3.1.2.4 배기통 톱의 전방·측면·상하주위 60 c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60 cm)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A2.3.1.2.5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60 cm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다.

A2.3.1.3 급기구

A2.3.1.3.1 급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A2.3.1.3.2 급기구는 옥외 또는 현관등 통기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배기톱으로부터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위치로 한다.

A2.3.2 강제배기식 보일러

강제 배기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A2.3.1.2와 A2.3.1.3의 기준에 따른다.

A2.4 복합배기통

A2.4.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에 의하여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A2.4.2 자연배기식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에 한한다.

A2.4.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에 있어서는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A2.4.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mm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로 공용부에 접속한다.

A2.4.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mm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A2.4.6 기타 필요한 사항은 A2.1의 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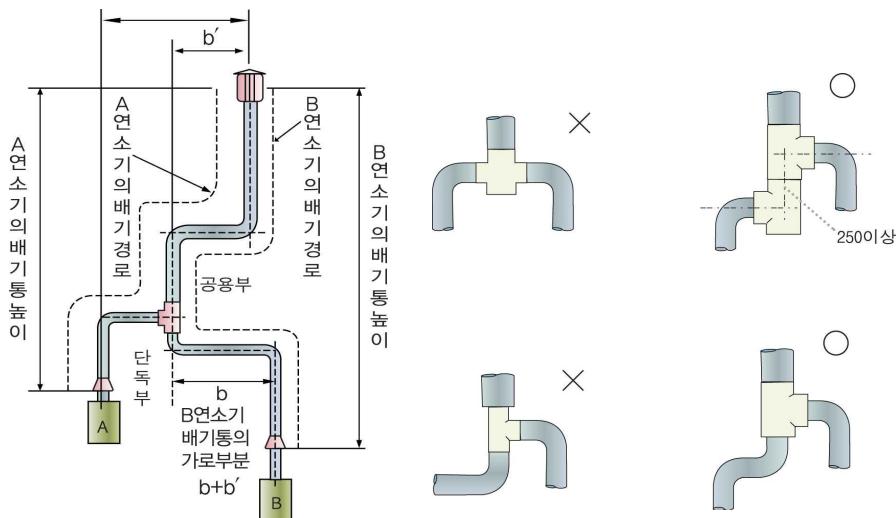


그림 A2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A2.5 공동주택 공동배기방식

A2.5.1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A2.5.1.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시키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A2.5.1.2 공동배기구의 평균 유효높이

$$\text{평균유효높이} = \frac{a_1 + a_2 + a_3 + \dots}{\text{보일러수}}$$

위의 식에서 $a_1 + a_2 + a_3 + \dots$ 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공동배기구 최상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A2.5.1.3 접속 가능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 및 보일러의 수는 표A2.5.1.3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공동배기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고층부·저층부 등 가까운 계층끼리 공동배기구를 설치한다.

표 A2.5.1.3 접속가능 보일러수 및 가스소비량

공동배기구의 평균유효높이	연결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kcal/hr)	접속되는 보일러수
10 m 이하	125 000	10 이하
10 m 초과 ~ 15 m 이하	156 000	11 이하
15 m 초과	172 000	12 이하

A2.5.1.4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며, 동시사용율은 표 A2.5.1.4와 같다.

$$\text{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 = \text{배기통 단면적의 총합} \times \text{동시사용율} + \text{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A2.5.1.5 공동배기구의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A2.5.1.6 동일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A2.5.1.7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A2.5.1.8 공동배기구는 주위에 공기총이 있는 등 단열성이 좋은 경우 이외에는 보온한다.

A2.5.1.9 공동배기구 최하부에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A2.5.1.10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표 A2.5.1.4 동시사용율 표

보일러수	보일러의 동시사용율(F)		
	온수기 등	보일러	비고
1	1.00	1.00	
2	1.00	1.00	
3	1.00	1.00	
4	0.90	0.95	※ 동시사용율(F)는 실정에 맞도록 정하되 표의 값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5	0.83	0.92	
6	0.77	0.89	
7	0.72	0.86	
8	0.68	0.84	
9	0.65	0.82	
10	0.63	0.81	
11	0.61	0.80	
12	0.60	0.80	
13	0.59	0.80	
14	0.58	0.79	
15	0.57	0.79	
16	0.56	0.78	
17	0.55	0.78	
18	0.54	0.77	
19	0.53	0.76	
20	0.52	0.76	
21이상	0.50	0.75	

A2.5.1.11 공동배기구내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2 m이상, 공동배기구내 이웃한 두 배기통 끝의 높이 차이는 25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2.5.1.12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한다.

A2.5.1.13 공동배기구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A2.5.1.14 공동배기구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A2.5.1.15 공동배기구내 접속되는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 보다 축소되지 않아야 하며, 배기통의 재료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의 STS 304로 두께 0.3 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 ·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A2.5.1.16 보일러 설치 실에는 반드시 외기와 통하는 급기구를 설치하고 급기구의 단면적은 각각 단독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A2.5.1.17 보일러 설치실에는 환기팬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기팬용 급기구를 충분한 크기로

설치한다.

A2.5.1.18 A1.4(2) 또는 A1.4(3)의 규정에 의하여 반밀폐식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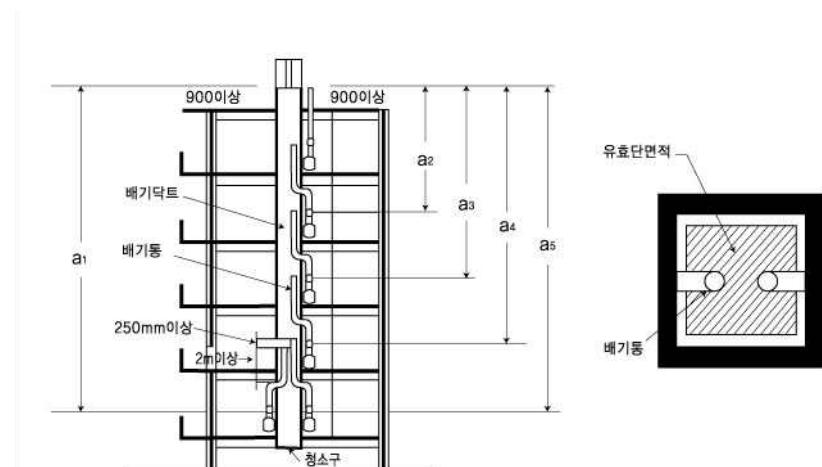


그림 A3 공동배기구의 설치 예

A3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 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3.1 일반사항

A3.1.1 급·배기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A3.1.2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A3.1.3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급·배기톱의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3.1.4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톱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A3.1.5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 부착한다.

A3.2 자연급·배기식

A3.2.1 외벽식

A3.2.1.1 급·배기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충분히 벽외부로 나오도록 설치하도록 수평이 되게 한다.

A3.2.1.2 급·배기톱은 양측면 또는 상하 1500 mm 이내의 간격에는 돌출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A3.2.1.3 급·배기톱은 전방 150 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A3.2.1.4 급·배기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A3.2.1.5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mm 윗쪽에 설치한다.

A3.2.1.6 급·배기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mm 이상으로 한다.

A3.2.2 챔버식

A3.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A3.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 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A3.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 설치벽·측면·차단판·천정·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mm, 상방 600 mm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A3.2.2.4 챔버급기구의 크기

$$\text{급기구 유효면적} = \text{유효개구면적} - \text{배기통 단면적}$$

A3.2.2.5 차단판 최하부에 70 mm정도의 공간(보조 급기구)을 설치한다.

A3.2.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mm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A3.2.2.7 챔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다음의 수치 이상으로 한다.

바닥 설치형	700 mm
벽걸이형	200 mm

A3.2.3 덕트식**A3.2.3.1 공통사항**

A3.2.3.1.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A3.2.3.1.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A3.2.3.1.3 급·배기톱의 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A3.2.3.1.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A3.2.3.1.5 덕트의 시공시에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A3.2.3.1.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되도록 한다.

A3.2.3.1.7 급·배기덕트는 시공시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건축중 덕트내에 이물질(몰타르 등)이 들어가 내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A3.2.3.1.8 덕트내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A3.2.3.1.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직경 16 mm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A3.2.3.2 U덕트식

A3.2.3.2.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은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A = \frac{Z \times F \times Q}{1,000}$$

여기에서,

A : 단면적(cm^2)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text{cm}^2/1,000 \text{ kcal}/\text{hr}$)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kcal/h)

A3.2.3.2.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A3.2.3.2.3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대하여 평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A3.2.3.2.4 덕트의 아래 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A3.2.3.2.5 덕트의 아래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3.2.3.2.6 덕트의 아래 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표 A3.2.3.2.1 단면계수(Z)

층수	단면계수(Z)	비 고	층수	단면계수(Z)	비 고
3	21.6	각층의 높이가 2.5~3.0m	12	26.2	각층의 높이가 2.5~3.0m
4	24.3		13	26.1	
5	25.4	건물에 적용한다.	14	26.0	건물에 적용한다.
6	25.7		15	25.9	
7	26.1		16	25.9	
8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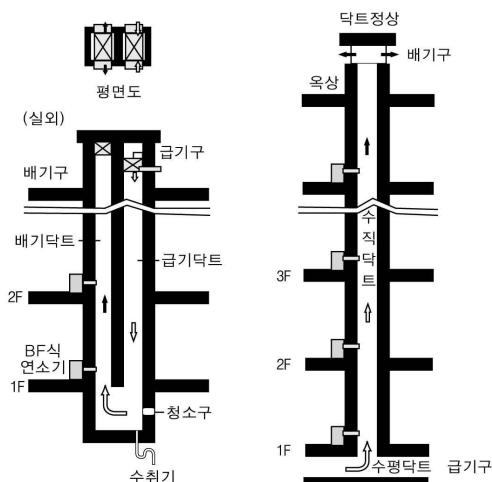
A3.2.3.3 SE덕트식

A3.2.3.3.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한다.

A3.2.3.3.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되 풍압에 대하여 평형이 되도록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히 배치한다.

A3.2.3.3.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로
한다.

A3.2.3.3.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그림A4 SE 덕트 및 U 덕트의 구조 예

A3.2.3.3.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A3.2.3.3.6 기타 필요한 사항은 A3.2.3.2의 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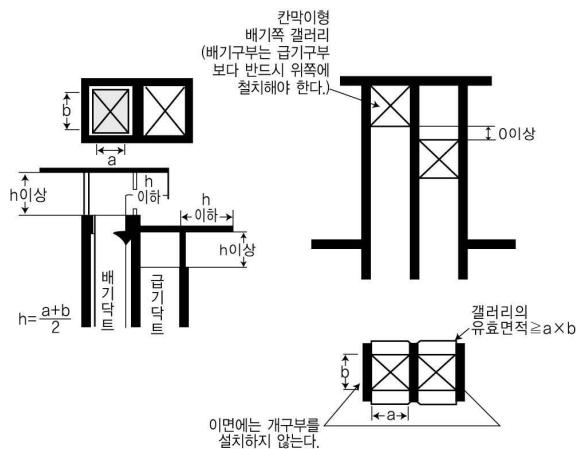


그림 A5 U덕트의 설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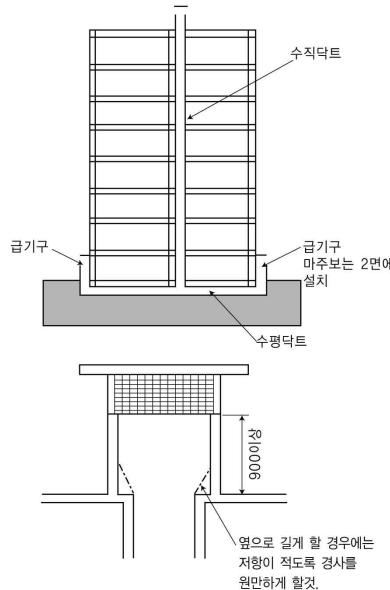


그림 A6 SE 덕트 설치의 예

A3.3 강제급 · 배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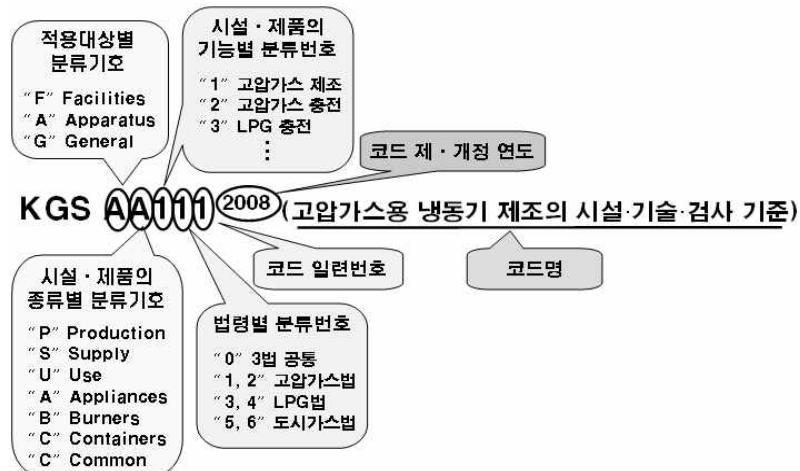
A3.3.1 급 · 배기통의 주위조건은 A3.2.1.1.1 내지 A3.2.1.1.4)에 따른다.

A3.3.2 급 · 배기통의 옥외부분은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A3.3.3 급 · 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류	기호	시설구분	분류	기호	시설구분	
제품(A) (Apparatus)	기구(A) (Appliances)	AA1xx	냉동장치류	제조·충전 (P) (Production)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AA2xx	배관장치류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AA3xx	밸브류		FP3xx	LP가스 충전시설
		AA4xx	압력조정장치류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AA5xx	호스류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AA6xx	경보차단장치류	시설(F) (Facilities)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AA9xx	기타 기구류		FS2xx	LP가스 판매시설
	연소기(B) (Burners)	AB1xx	보일러류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AB2xx	히터류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AB3xx	렌지류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AB9xx	기타 연소기류	저장·사용 (U) (Use)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용기(C) (Containers)	AC1xx	탱크류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AC2xx	실린더류		FU3xx	LP가스 저장시설
		AC3xx	캔류		FU4xx	LP가스 사용시설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AC9xx	기타 용기류	일반(G) (General)	GC1xx	기본사항
			공통(C) (Common)	GC2xx	공통사항	

가 스 기 술 기 준

KGS FU551²⁰⁰⁹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2009년 5월 29일 발행

- 발 행 인: 박 환 규
 - 발 행 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우편번호 429-71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TEL : (031) 310 - 1315
FAX : (031) 314 - 8189
-

KGS Code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031-310-1311~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S FU51 2009

